

서울특별시립 승화원 민간위탁 동의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40
----------	-----

2012년 6월 21일  
보건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2년 6월 8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12년 6월 12일

다. 상 정 일 자 :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(2012년 6월 21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(복지건강실장 김경호)

가. 제안이유

- 시립승화원은 서울특별시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장사시설로서,
-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나.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12.10. 1 ~ 2015. 9. 30)
- 위탁업무
  - 시립승화원(화장장) 관리·운영
  - 묘지관리 5개소, 봉안시설 5개소, 산골시설 2개소, 자연장지 1개소 등

## 3. 검토보고(수석전문위원 김태호)

### □ 민간위탁 지속 사무에 대한 타당성 검토

#### 가. 서울특별시립 승화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개요

- 본 동의안은, 상기 시립 장사시설 운영법인(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)의 위탁기간이 만료(예정)됨에 따라, 동 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무를 향후 3년 동안에도 민간위탁 형태로 지속 운영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항에 의거해 서울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- 시장이 상기 장사시설에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 - 시립승화원(화장장) 관리·운영
  - 묘지관리 5개소, 봉안시설 5개소, 산골시설 2개소, 자연장지 1개소 등

#### 나.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

-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

위탁하는 것은,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이 요청됨.

- 그런데, 상기 장사시설에 위탁하려는 사무는 주로 화장시설 운영·관리 및 시립묘지 유지·관리 등 대체로 비권력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무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, 이에 관한 특별한 문제는 초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.

#### 다.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

- 민간위탁의 타당성 내지 적합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학계를 중심으로 하여 기존에 많은 논쟁이 있었음.
- 민간위탁 찬성론자들은 민간위탁이 비용절감과 서비스 질의 개선을 가져오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, 반대론자들은 그러한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함.
- 반대론자들은 민간위탁은 부패와 부정의 소지를 증대시키고 정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고 보며, 설사 정부의 예산이 절감되더라도 이는 비용이 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전가된 것으로 사회적 총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함.
- 시립 승화원과 같은 장사시설의 사무는 화장시설의 가동 및

묘지 관리 등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업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,

- 더욱이 상기 장사시설의 사무는 화장시설(승화원)뿐만 아니라 시립묘지 5개소, 봉안 시설 5개소, 자연장지 1개소, 산골공원 2개소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총체적 관리. 운영을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,
  - 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종합 관리.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로서 그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그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.
- 따라서 전문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짐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소위원회 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출석의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립 승화원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84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2년 6월 8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시립승화원은 서울특별시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장사시설로서
- 나.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립 승화원(1987. 1. 1 위탁)
- 소재지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 178-1 외
- 시설규모
  - 승화원(화장시설) : 연면적 30,283 $m^2$ , 건물 4개동(8,795 $m^2$ ), 화장로 23기
  - 봉안당(5개소) : 연면적 8,517 $m^2$ , 안치위 81,980위(능력 90,311위)
  - 자연장지(1개소) : 연면적 27,120 $m^2$ , 안치위 2,987위(능력 11,865위)
  - 산골공원(2개소) : 연면적 12,232 $m^2$ , 안치위 81,714위
  - 시립묘지(5개소) : 연면적 7,150천 $m^2$ , 분묘 69,854기
- 운영인력 : 96명(정규직 89명, 특정 7명)
- 위탁법인 :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
- 위탁기간 : 2009. 10. 1 ~ 2012. 9. 30(3년간)

## 나.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12.10. 1 ~ 2015. 9. 30)
- 위탁업무
  - 시립승화원(화장장) 관리·운영
  - 묘지관리 5개소, 봉안시설 5개소, 산골시설 2개소, 자연장지 1개소 등
- 소요예산 : 17,635,400천원(2012년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 등

## 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 -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
  -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
  -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조
- 민간위탁 추진현황
  - 1987. 1. 1 : 서울시립 장사시설 서울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
  - 2009. 9.30 : 시립장사시설 관리운영 및 장례업무 위·수탁협약 체결

## 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시립승화원 운영은 화장시설 관리·운영 및 시립묘지 유지관리사업으로 장사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
- 따라서, 시립승화원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(운영위탁) 제1항
  -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-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(운영위탁)  
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.
-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(대행사업)  
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에 의한다.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) 제1항 제3호
  -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 
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 
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  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#### 나. 기타사항 : 해당없음